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3월 4일
전문위원 최 광 호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21 - 15

나. 발 의 자 : 정정희 의원 외 8명

다. 발의일자 : 2021년 2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2월 25일

2.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비(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운영 위탁기준 정비(안 제5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안 제17조의5)

- 위원회 기능·구성·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4조, 제30조

나. 협조부서 : 교육청소년과

다. 입법예고(2021.2.19.~2021.2.24.)결과: 의견있음(“별첨” 참고)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 기능을 가진 ‘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3조)**

- 용어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도서관법」제2조제1호, 제2조제2호[1] 및 관련 조문 정의 내용을 반영함

❍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구청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신설

❍ **운영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제5조제2항)**

- 도서관 운영을 비영리 외부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함

---

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 **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제5장, 안 제17조 ~ 안 제17조의5)**

- 제5장에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위원회 신설

❍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17조)**

-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구성(안 제17조의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내·외 인사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정 성별(10분의 6) 초과를 제한

❍ **위원 해촉 규정(안 제17조의3)**

- 위원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해촉 사유 등 명시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4)**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원칙, 업무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8개[2]의 강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안 **제5장 20조를 제1장을 신설하여 제6장 2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 구립도서관(8개): 가양, 강서영어, 곰달래, 길꽃어린이, 꿈꾸는어린이, 등빛, 우장산숲속, 푸른들청소년도서관

❍ 신설되는 제5장(안 17조 ~ 안 17조의5)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으로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구립도서관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2021.2.19.~2.24.) 기간 중에 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관계 법령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